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의장 내 음향장비 반입 금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20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이성윤 · 이병진 · 송옥주 · 임미애
이원택 · 손 술 · 서삼석 · 김 윤 · 문대림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 의안번호 : 152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

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Ⅲ. 검토의견

1. 회의장 내 음향 장치 반입 금지

개정안은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회의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로써 철거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148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u>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u>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① ----- ----- <u>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u>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u> 2. <u>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u> ② <u>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148조¹⁾에 따라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1)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동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해 왔음.²⁾

이에 개정안은 회의장에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철거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물품 반입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문에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열거·예시하는 경우 기술 발전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해당 물품을 전부 규율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규정방식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체계적으로 개정안은 ①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음식물 또는 ②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장치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음향장치 등³⁾도 ②에 해당하여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⁴⁾

또한, 개정안은 물건 등 반입 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 철거 또는 사용 중지 명령에 관한 근거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문의 규정취지는

2)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진행하거나(2024. 12. 7.) 무선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한 사례(2025. 12. 9.)가 있었으며, 당시 의장이 제지하여 모두 중단되었음.

3)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의원은 사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국회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음.

헌행법 제145조⁵⁾에 따른 질서유지권의 활용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실현할 수 있어 보임.

「국회법」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국회에서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등) ①신문사·통신사·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녹음·녹화 및 촬영) ②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윤준병의원안은 법에서 금지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철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승인받은 음향장치 등도 철거 혹은 사용 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므로 법체계간 충돌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5)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위반 등 행위 추가

개정안은 의원 징계 사유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을 반입한 경우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반입하여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5조).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제1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반입 금지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였을 때
	11. 제1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0. ~ 15. (생략)	12.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15의2. (생략)	18. (현행 제15호의2와 같음)

현행	개정안
16. (생략)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64조⁶⁾에 따라 현행 법 제155조 각 호는 의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헌법상 청렴 또는 지위남용의무,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 규정 및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개정안은 의원의 징계 사유에 안 제148조를 위반하여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이를 반입하여 철거 또는 사용 중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국회의 자율권을 통해 제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반입하거나 이에 대해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위신을 훼손시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55조제8호⁷⁾는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6)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7)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활용하여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제155조에 제10호를 신설하면서 기존 규정(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조문번호가 순연되었으나 제155조 단서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⁸⁾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0·11. (신설 조문)

1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기존 제10호**)